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센터장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과학기술/ICT 협력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신입 센터장을 모시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 모집직위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장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2년* (임기 시작 예정 : 2027.3.1.부터)

* 최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시점의 업무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음

※ 직무수행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수행 또는 부정행위 등이 확인 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 임기는 3+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 정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는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직무내용

- 한-러 과학기술/ICT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대외활동
- 한-러 연구자간 공동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 참여 지원
- 현지 대사관, 공공기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업무
- 센터 조직 운영 및 관리 등

□ 근무조건 및 처우

- 근무지 :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모스크바)
- 근무 형태 : 주 5일 상근
- 급여 및 수당 : 연 200,000 USD* (수당,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포함)
 - * 해외거점센터 인건비 표준화 방안에 따라 정해진 규모이며, 급여 및 수당은 임기 동안 변동 없음
 - ※ 현지 사정에 따라 모스크바 내 근무지 변경 가능

□ 신청자격

- 우대사항 : 러시아와의 과학기술/ICT R&D 분야 공동연구·협력사업 경력 소지자
- 임기 시작일로부터 현지 근무가 가능하며, 임기 내 센터장 업무에 전념 가능한 자
- 기관관리 및 조직운영 관련 경험자
- 국가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휘·감독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
- 현지 외교·행정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청 제한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전형절차 및 심사항목(안)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일시 개별 통보

○ 심사항목(안)

- (1차) 서류전형

구분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1	센터 발전 전략의 적절성	· 센터 발전 목표 및 운영 전략	30
2	국내외 협력 경험	· 현지 협력활동 경력(현지 관련 업무 수행, 인적 네트워크 등) · 국내 유관기관 협력 경험 등	30
3	과학기술 및 정책 분야 이해도	· 과학기술 연구·정책 분야 경력	20
4	조직 운영 역량	· 조직 관리 경험 및 능력 - 부서 또는 기관 관리 경력 - 인력 운영, 조직원 역량 강화 및 리더십 - 정부/유관기관 등 협업기관과의 소통	20
합 계			100

- (2차) 면접심사

구분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1	센터 발전 전략의 적절성	· 센터 발전 목표 및 운영 전략	30
2	과학기술 및 정책 분야 이해도	· 과학기술 연구·정책 분야 경력	20
3	국내외 협력 경험	· 현지 협력활동 경력(현지 관련 업무수행, 인적 네트워크 등) · 국내 유관기관 협력 경험 등	15
4	조직 운영 역량	· 조직 관리 경험 및 능력 - 부서 또는 기관 관리 경력 - 인력 운영, 조직원 역량 강화 및 리더쉽 - 정부/유관기관 등 협업기관과의 소통	20
5	언어 활용 능력	영어 또는 현지어 활용 능력	15
합 계			100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채용정보→채용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양식1) 1부
 - 이력서(양식2) 1부
 - ※ 1차 서류 통과자에 한해 이력서에 기재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등) 제출
 - 자기소개서(양식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양식4) 1부
 - 대표적 연구실적(또는 조직관리 실적) 증빙자료 (양식5) 1부
 - 추천서 (양식 6)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 7)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양식 8) 1부
 - (최종 합격 후 제출) 공인 어학성적증명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1부
 - ※ 선발연도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공인 어학능력시험 최소 점수표〉

영어					러시아어
TOEFL	TOEIC	TEPS	FLEX	한국외국어대 위탁 어학검정	TORFL
PBT 567점 이상	790점	385점	700점	70점	70점
CBT 227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IBT 86점 이상					

- 제출방법 : 우편접수(혹은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제출
 - 우편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현동로 25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네트워크팀 러시아 사업담당자
 - 전자메일 : jslee@nrf.re.kr
- 제출기한 : 2026. 10. 7(수) ~ 2026. 11. 6(금) 18:00 (도착분 기준)
 -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유효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향후일정

- 2026.10.7~11.6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11월 중 서류심사
- 2026.12월 초 면접심사
- 2026.12월 중 신원조회 및 최종선정
- 2027. 3월 중 임기 개시(예정)

- ※ 1차 공고 마감 시 지원자 3명 미만인 경우 또는 지원자 중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 가능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현지 비자 발급이 불가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본 공고문은 공고기간 내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공모 취소 포함),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임
- 외교 상황 등에 따른 계약의 당면 해지
 - 양국 외교관계 변화, 러시아 정부의 규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센터장의 근무지 및 근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유 등으로 현지 파견(상근 근무) 자체가 불가해질 경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이 당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고용보장이나 손해배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청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관리하여야 함
 - ※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로 갈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획서 및 보고서에 AI 도구 사용 내역 기술을 권장함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책임자에게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보고 및 평가

-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고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을 할 수 있음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4조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지침 및 현지 법령을 따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황윤지 사무관 / 김영재 주무관
(전화: 044-202-4353, e-mail: yoonz22@korea.kr/전화: 044-202-4351, e-mail: dudwo1914@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네트워크팀 이주승 연구원
(전화: 02-3460-5666, e-mail: jslee@nrf.re.kr)

참 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대표적 연구실적(또는 조직관리 실적) 증빙자료 1부
6. 추천서 1부
7. 개인정보 및 파세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양식 1]

지 원 서

☐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비고

본인은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장 공모에 지원합니다.

별첨 :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

2026. . .

신청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양식 2]

이 력 서

사 전	성 명	〇 〇 〇 (한자 : 〇 〇 〇)				
	소 속			직위		
	사무실 주소	(FAX :)				
	자택 주소					
생년 월일	. .	연 락 처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기 간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00.00.~‘00.00.			학사
	‘00.00.~‘00.00.			석사
	‘00.00.~‘00.00.			박사
	‘00.00.~‘00.00.			

주 요 경 력	기 간	소속 및 직위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주 요 실 적	내용	비고(연도 등)
	R&D 관리 성과 및 한-러 협력 성과 등	

[양식 3]

자 기 소 개 서

소속	직위	성명	직책	비고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과학기술/ICT 분야에 대한 연구 및 행정 경력, 러시아와의 국제협력활동 경험 및 주요 활동 내역, 언어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 (5페이지 이내)

[양식 4]

직무수행계획서

소속	직위	성명	직책	비고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센터의 발전 목표, 운영 전략, 조직 관리, 운영 계획 및 기대효과 중심으로 작성(10페이지 이내)

[양식 5]

대표적 연구실적(또는 조직관리 실적) 증빙자료

번호	내용
1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
(최대 5번 까지 복사해서 작성)

[양식 6]

추천서

추천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및 직위	전공분야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추천사유

2026. .

추천자 : (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양식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글로벌전략거점)

과제명 :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사업 (G-KIC 러시아)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예) 연구책임자		예) YYYY.MM.DD		
예) 공동연구원				
예) 참여연구원				
예)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 000-00-00000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본 과제에 참여하는 한국 측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양식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 15 -

- 16 -